

보 고 사 항

□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○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8. 9. 8

(화순군의회 공고 1998-7호)

< 공고내용 >

- 집회일시 : '98. 9. 14 (月) 오전 10시
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

○ '98. 9. 1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

閔炳甲 부군수 → 전라남도 진출

朱東植 전라남도 전입 → 부군수

□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 현황

○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- '98. 8. 26 집행부 이송

○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- '98. 8. 26 집행부 이송

□ 각종 의안 발의 및 제출 현황

○ 제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- '98. 9. 7 의원발의

◦ 발의자 : 문팔갑 의원의 3인

◦ 회 기 : '98. 9. 14 (月) (1일간)

○ 제67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- '98. 9. 7 의원발의

◦ 발의자 : 문팔갑 의원의 3인

◦ 출석요구내용 : 별첨

○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- '98. 9. 5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자치 12200-1184 (98. 6. 23)호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기능최퇴, 유사 중복기구를 통·폐합하여 작으면서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
-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함

○ 주요골자

- 기능최퇴, 유사중복 기구를 현행 '15개 실과'를 '11개 실과'로 통·폐합 하면서 기구의 기능에 맞게 기구의 명칭 변경

- 폐지 (△1) : 민방위재난관리과

- 통·폐합 (△3)

- 민원봉사실 + 지 적 과 → 민원봉사과
- 농업정책과 + 산 업 과 → 농 산 과
- 도시주택과 + 지역경제과 → 도시경제과

- 명칭 변경 (3)

- 문화공보실 → 문화관광과
- 내 무 과 → 총 무 과
- 환경보호과 → 환 경 과

- 실과의 분장사무를 별첨과 같이 조정 배분함.

· 다른조례의 폐지(부칙 제2조)

-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
- 화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
- 화순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

· 다른조례의 개정(부칙 제3조)

-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
-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
-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

-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
- 화순군 공인조례
-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
- 화순군 포상조례
-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
-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- 화순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
- 화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
- 화순군 보육위원회 운영조례
-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
-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오·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
- 화순군 농림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
-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화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
- 화순군 지명위원회 조례
- 화순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- 화순군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
-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

○ 관련근거

- 자치 12200-1184 (98. 6. 23)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
- 조직개편협의(안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

※ '98. 9. 5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- '98. 9. 5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요구한 문화재 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이 승인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고

- 일반과 별정 복수직렬 직위의 별정직 임용 가능성에 대비 하면서,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일반직 공무원과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등 현실에 맞게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.

○ 주요골자

-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부녀상담원, 아동복지지도원, 농기계교관, 보건진료원, 비서, 가정복지담당, 문화재관리원, 사회복지과장, 의회전문위원으로 확대하면서
- 제4조 제2항 단서중 우리군에 없는 '비서관'은 삭제하고 일반직의 임용자격기준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별정직의 임용자격기준도 규칙으로 정함.

○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
- 지방별정직공무원정원책정 승인서

※ '98. 9. 5 총무위원회 회부

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8. 9. 5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지도소의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따라 개정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소의 명칭을 '농업기술센터'로 변경하고
- 군 본청의 농업 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간 중복기능을 군 본청의 농업관련 조직 또는 지도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.

○ 주요골자

- 제목 및 내용 중 '농촌지도소'를 '농업기술센터'로, '지도소'를 '센터'로 변경
- 지도소의 분장사무중 '전업농 육성지도업무'를 삭제하고,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, 농어민후계자 관련 업무등을 신설하고 일부 누락된 사무를 보완

※ '98. 9. 5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- '98. 9. 5 군수 제출

○ 제안이유

-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사무량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적정정원을 새롭게 정하고
-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만 구분하여 정원조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,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임.

○ 주요골자

- 정원관리 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함.
-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함.
 - 집행기관의 정원 : 647명
 -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6명
- 정원초과 현원은 2000. 12. 31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봄 (부칙 제2조)

○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
-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[자치 12200-1184호 (98. 6. 23)]
-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

※ '98. 9. 5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- '98. 9. 5 군수 제출

○ 제안이유

- 기능쇠퇴, 유사·중복기구가 통·폐합되고 현행기구의 명칭과 기능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롭게 정하고
- 군·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를 위함

○ 주요골자

-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함.
 - 기구의 통·폐합과 명칭변경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(명칭) 변경
 - 위임사무 삭제

※ '98. 9. 5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- '98. 9. 11 군수 제출

○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 106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장소중 교통·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
- 관할구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자구를 수정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○ 주요골자

- 제명'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'를 '화순군면출장소조례'로 하고
- 교통·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주민 이용 실적이 저조한 도암면 용강출장소와 이양면 목곡 출장소를 폐지하며
- 제4조 제2항중'읍면장'을 '한천면장'으로 개정

※ '98. 9. 11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8. 9. 5 군수 제출

○ 제안이유

- 화순군민의상 수상 대상자 추천이 시상 예정일 30일전 까지로 되어있어 추천자에 대한 공적 확인등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의가 어려워 60일 전까지로 개정코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군민의상 대상자 추천을 '30일전 까지'를'60일전 까지'로 개정

※ '98. 9. 5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- '98. 9. 7 군수 제출

○ 제안이유

-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 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
-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 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함.

○ 개정근거 : 지방세법 제9조

○ 주요골자

- 제22조의1(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대한 감면) 신설

※ '98. 9. 7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 - 98. 7. 29 군수 제출

○ 제안이유

- 우리군 읍·면단위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의 가용연한이 거의 만료되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
-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심의와 현지답사 등을 종합 '98. 7. 28 '화순읍 교리'를 최종 입지로 선정함에 따라
- 동장소를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로 확정 하고자 함.

○ 최종 선정 후보지 개요

- 위치 : 화순군 교리 산 1 번지 외
- 매립가능면적 : 약 40,000 m² · 매립가능용량 : 약 600,000 m³
- 사용가능 연한 : 약 19년 (연장 가능) · 토지상태 : 임야, 농경지(유희지)
- 침출수 방류 구역 : 1차 처리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
- 사후 토지이용 계획 : 체육공원, 근린공원

※ '98. 7. 29 총무위원회 회부